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점용(굴착·복구) 공사 허가 관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허가 및 착공·준공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11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

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는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을 조사한 후 공사 내용 등을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한 뒤, 사업시행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실시·완료하면 공사가 허가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계를 제출하고도 준공계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준공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준공계 제출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도로점용(굴착·복구) 공사의 착공허가를 수리한 뒤 공사가 허가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준공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21건의 공사 및 준공계 제출 후 사후 보완을 하지 않은 19건의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계 제출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준공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처리 부적정 내역(시스템상)

연번	허가번호	공사시작일 (공사종료일)	시스템 상 처리상태	처리 경과일 (25.9.30.기준)	지적사항
1		2023.10.4.	허가증교부 (착공계 미제출)	744일	착공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2		2024.4.11.	허가증교부 (착공계 미제출)	554일	착공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3		2024.6.21.	허가증교부 (착공계 미제출)	483일	착공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4		2024.7.1.	허가증교부 (착공계 미제출)	473일	착공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5		2024.7.9.	허가증교부 (착공계 미제출)	465일	착공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6		2022.12.8.	착공계접수 (준공계미제출)	1,044일	준공확인 신청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7		2023.5.10.	착공계접수 (준공계미제출)	891일	준공확인 신청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8		2023.9.18.	착공계접수 (준공계미제출)	760일	준공확인 신청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9		2025.6.10.	착공계접수 (준공계미제출)	129일	준공확인 신청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연번	허가번호	공사시작일 (공사종료일)	시스템 상 처리상태	처리 경과일 (25.9.30.기준)	지적사항
10		2025.6.18.	착공계접수 (준공계미제출)	121일	준공확인 신청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1		2023.4.27. (2023.5.31.)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822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2		2024.4.1. (2024.10.31.)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304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3		2024.4.29. (2024.11.30.)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273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4		2024.4.29. (2024.11.30.)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273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5		2024.4.29. (2024.11.30.)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273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6		2024.4.29. (2024.11.30.)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273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7		2024.5.1. (2024.12.31.)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242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8		2024.6.3. (2024.10.31.)	준공승인 (준공성과물 미제출)	304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9		2024.8.16. (2024.10.31.)	준공승인	304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20		2024.9.2. (2024.11.30.)	준공승인	274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21		2025.6.1. (2025.7.15.)	준공승인	46일	준공확인서류(준공성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표2] 도로점용(굴착·복구) 준공확인서류 사후제출자 처리 부적정 내역(시스템상)

연번	허가번호	준공접수일	제출예정일	기한경과일 (25.9.30.기준)	지적사항
1		2025.8.18.	2025.6.30.	109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2		2023.12.20.	2024.2.1.	607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3		2023.12.15.	2023.12.30.	640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4		2023.12.20.	2023.12.31.	639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5		2023.12.20.	2023.12.31.	639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6		2023.12.14.	2024.1.31.	608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7		2024.6.19.	2024.6.30.	457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8		2024.12.18.	2025.1.30.	200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9		2024.12.11.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0		2024.12.11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1		2024.12.17.	2025.1.24.	249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2		2024.12.11.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3		2024.12.11.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4		2024.12.11.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5		2024.12.18.	2024.1.30.	609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6		2024.12.18.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7		2024.11.27.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8		2024.11.25.	2025.2.28.	214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19		2024.11.27.	2024.12.31.	273일	사후제출 신청 후 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미흡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준공 진행을 위해 수차례 안내, 독촉 전화 및 공문 발송 등 독려하였으며, 준공제 제출 시 성과물인 지하시설물 도면은 공공측량성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준공제 제출 지연이 불가피하며 사후 정산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허가건수가 최근 3년 평균 1,444건으로 담당 공무원 수 대비 업무량이 과다하며 도로굴착복구 허가 담당과 준공 및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달라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향후 허가 및 준공 시스템 관리 담당을 일원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도로점용(굴착·복구) 공사 준공 처리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